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201

제출연월일 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통장·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,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,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(안 제41조제1항)

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.

- 나.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(안 제134조의2 신설) 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.
- 다.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(안 제164조의2 신설)
 - 1)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,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,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.
 - 2)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해당 협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에 고시하도록 함.
- 라.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(안 제166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항제2호)
 - 1)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 에서 15명으로,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.
 - 2)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, 시·도의회의 의장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.
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(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 - 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.
 - 2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, 사무처 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,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.
- 바.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(안 제212조 신설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·변경·폐지에 관한 사항,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2분의 1"을 "2분의 1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"로 한다.

제6장제4절의 제목 "하부행정기관"을 "하부행정기관 등"으로 한다.

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4조의2(통장 및 이장)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 - ②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 한다.
 - ③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4조의2(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(이하 이 조에서 "공공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- 1.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
- 2.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
- 3.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
- 4.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
- 5.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
- 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·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5명"을 "8명"으로 한다.

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67조제1항 중 "분쟁조정위원회"를 "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"로, "7명 이상"을 "과반수"로 한다.

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
- 3.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·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
- 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
- 3.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
- 4.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
- 5. 협약의 변경 및 종료
- 6.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 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8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4명"을 "5명"으로 한다.

2.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 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3장(제212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장 보칙

- 제212조(자치분권 사전협의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·변경·폐지에 관한 사항

- 2.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
- 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 · 감독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 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6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 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5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	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
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	력) ①
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	
회의원 정수의 <u>2분의 1</u> 범위에	<u>2</u> 분의 <u>1(소수</u>
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	점 이하는 올림한다)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	
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절 <u>하부행정기관</u>	제4절 <u>하부행정기관 등</u>
<u><신 설></u>	제134조의2(통장 및 이장) ① 행
	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
	<u>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</u>
	②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
	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
	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또는
	동장이 임명한다.
	③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
	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	<u>으로 정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64조의2(지방자치단체 상호

간의 협약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(이하이 조에서 "공공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- 1.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
- 2.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
- 3.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
- 4.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
- 5.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
- 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
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
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
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 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 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) ① ~ ③ (생 략)

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

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

 정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

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

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중 시·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.

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 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지방분 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거나 위촉하고.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 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 다.
- 1. ~ 3. (생 략)
- ⑥·⑦ (생략)
- 제167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67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.
 - ②·③ (생 략)
- 제18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) (생 략)

<신 설>

<u> </u>	<u>' — </u>
로 구성한다.	
5	
<u>8명</u>	

포하하여 11명 이내이 의원·0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⑥・⑦ (현행과 같음)
- 등)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 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--------- 과반수
 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제18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

<신 설>

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 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이 특히 필요한 경우
- 3.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

 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

 ·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

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 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
- 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

- 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간 협의·조정) ①·② (생 략)
 -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,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 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

 관의 장과 시·도지사 중 위

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3.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

3.	사무처리를	위한	재원	확보
1	<u>방안</u>			

- 4.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

 5. 협약의 변경 및 종료
- 6.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
 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
 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
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간 협의·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	
	-
	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

3.		 	
-		 	
-		 	
_	5명		
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3장 보칙
<신 설>	제212조(자치분권 사전협의)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의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·변경·폐지에 관한 사항 2.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